



1. 자가용전기설비의 구분에 대하여

- “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”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(공원내 가로등 설비가 있는 경우)

Answer

◎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“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”는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

◎ 따라서, 공원내 가로등설비가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전기안전관리자가 가로등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합니다.

(인터넷민원질의, 2005. 2. 21)

2. 아웃소싱업체(전기공사업자)가 변전실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지?

- A회사로부터 전기용량 16,000kVA를 B회사가 아웃소싱 받아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위탁관리가 가능한 지 여부
 - B회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안전관리 기술인력도 보유하고 있음

Answer

◎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·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◎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·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모든 시설물(전기, 가스, 기계, 설비 등)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합니다.

◎ 따라서, A회사의 수전실을 위탁받으려고 하는 전기공사업체인 B회사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A회사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.

(인터넷민원질의, 2005. 6. 20)



3. 고속도로 터널용전기설비 2개소 안전관리자 1인 선임가능여부?

-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“동일 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는 안전관리업무를 1인이 할 수 있다”와 관련하여 질의함

Answer

◎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·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,

◎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.

◎ 이는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상주 근무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완화한 것으로 터널간 거리 및 전기설비용량과 관계없이 선임이 가능합니다.

◎ 선임완화에 대한 취지와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인접 터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선임을 하여야 할 것이며,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상주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

◎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터널이 아닌 고속도로 노선상에 있는 건물의 수전시설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따라서 각각의 수전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.

(인터넷민원질의, 2005. 4. 20)

4.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 처벌근거

-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·해임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어떤 근거로 처벌되는지
- 안전관리대행업체와 수용가간에 안전관리대행계약을 작성하면 선임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전력기술인협회에 선임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는지

Answer

◎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104조(벌칙)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동법 제108조제2항제1호(과태료)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.

◎ 법 제73조제3항에 의하면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보고 법 제73조의2에 의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

◎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(안전관리업무를 대행)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(소유자 또는 점유자)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선임(해임)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(인터넷민원질의, 2003.)